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73호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관내 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창원시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
----------	----

발의연월일: 2026. 10. 15.

발 의 의 원: 백승규 · 감규상 · 곽은정 · 권순재 · 김동엽
김원일 · 남호준 · 류성국 · 박강우 · 박연정
박해정 · 박현재 · 변보미 · 서명일 · 심임숙
이무식 · 이우완 · 장병운 · 정순옥 · 조은우
진형익 · 하경석 의원(22명)

1. 제안이유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관내 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창원시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원시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

제9조 중 “창원 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를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관내 경찰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u> <u>창원시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u> <u>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u>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창원시 관내 경찰서에서 협조를</u> <u>요청한 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u>창원 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u>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 <u>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관내</u> <u>경찰서</u>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삭제></u>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30.>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창원시 경관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 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